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및 공영화 명시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74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및 공영화 명시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5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및 공영화 명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지역에너지계획에 지역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 제3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u>제3조(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해당 영역 내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자연력을 활용한</u>

4. ~ 7. (생략) ③·④ (생략)	<u>재생에너지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 조성)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u> 4.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기본계획¹⁾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①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에 관한 사항, ②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1)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나,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2)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관한 사항, ③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④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⑤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⑥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음.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7조제2항 각 호)]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9%에 불과하며, 전북, 제주, 강원 등의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각각 49%, 47.3%, 33.8%인 반면 국가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에 불과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해당 영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함으로써 재

3) 한겨레, “[단독] 수도권 ‘재생에너지 자립률’ 1.7%뿐... 갈 길 먼 RE100”, 2024.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4072.html>

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에너지계획에 지역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에너지 관련 정책의 전반에 걸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현행법 제4조⁴⁾에서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의 내용도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자립 원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개별법에 규정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재생에너지 공영화에 관한 내용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화’의 개념 및 범위가

-
- 4)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5) 개별법에도 각 에너지원 별 시책과 장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불명확하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